

대구지방법원 2019. 4. 5 선고 2017가단12613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---

## 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2. 12 선고 2019나307933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19. 4. 5 선고 2017가단126139 판결

## 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

담당변호사 류제모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

변론 종결 2019. 3. 22

판결 선고 2019. 4. 5

## 주 문

1. 피고 B 은 2, 057, 857원, 피고 C 는 1, 234, 714원, 피고 D , 피고 E , 피고 F 은 각823,143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,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/ 14지분에 관하여 2018 . 3. 30.자,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/ 14지분에 관하여 2017. 9. 14.자,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4지분에 관하여 2017. 8. 28.자,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4지분에 관하여 2017. 9.12.자,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4지분에 관하여 2018. 2. 28.자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원고의 주장

가. 당사자의 지위

- 1)원고는 대구 남구 G 대 4,038.3irf(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.)의 96.88%의 공유지분(1183.4921/1221.6)을 소유한 법인이고,피고들과 소외 망 H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건축된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.)에 대한 공유지분(피고 B과 피고 C는 각 3/14, 위 H과 피고 D, 피고 E, 피고 F은 각 2/14)을 소유한 사람들이다.
- 2)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망 H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고 대지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그 소송은 원고의 청구대로 전부 인용되고 확정되었다(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7688호, 대구지방법원 2010나2709호, 대법원 2010다87467호,갑 제3호증의 1내지 3각 판결 참조).

3) 망 H은 1983. 7. 31. 사망하였고,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/14지분을 단 독상속하였다.

나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

1)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.) 제7조는 ‘대 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.

’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가를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그리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시가는 5,762,000원이다.

다. 따라서 피고 B은 2, 057, 857원(= 5, 762, 000원 x 5/ 14), 피고 C는 1, 234, 714원(= 5, 762, 000원 x 3/ 14), 피고 D, 피고 E, 피고 F은 각 823, 143원(= 5, 762,000원 x 2/14)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,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5/14지분에 관하여 2018. 3. 30.자,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/14지분에관하여 2017. 9. 14.자,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4지분에 관하여 2017.8. 28.자,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4지분에 관하여 2017. 9. 12.자,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 14지분에 관하여 2018 . 2. 28.자 각 매매계약을원인으로 한 {위 매매계약일자는 각 이 사건 소장(조정신청서) 부분 송달일임}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 2.판 단

갑제1,2,3,4,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.

한편 집합건물법 제7조의 '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'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정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 3.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신중화

별지